

재활의학 수련프로그램 평가

대한재활의학회 수련위원회

윤 서 연

목차

- 학회 수련실태조사 작성지침
- 학회 전공의 배정규정
- 지도전문의 자격 및 교육

전산화 수련실태조사시스템

- <http://karm.or.kr/record/>
- 2012년도부터 시행
- 서류와 전산입력내용이 모두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며 자료평가는 전산화 수련실태조사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화시스템에서 입력사항이 오류 없이 입력되기 위해 각 수련기관의 모든 지도전문의 및 전공의는 학회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산화 수련실태조사서의 입력 후 학회확인이 종료(실사병원의 경우 실사일)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요령

- Guidelines -

	문항 점수(점)	배점 기준(%)
인력분야	13	15
진료분야	62	20
시설분야	45.7	30
수련분야	46	35
	166.7	100

※ 병원실사 시 작성오류로 판단되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시한 경우 2주 이내에 소명하고, 작성오류나 자료오류로 판단된 경우에만 그 항목의 소명된 자료를 인정함.

※ 모든 진료실적, 시설 및 장비 관련 증빙 서류는 해당기관 기관장 혹은 책임자의 직인이 필요함.

수련병원 성격

수련병원 성격

1. 병원 행정

1) 병원형태

- 가. 대학병원
- 나. 종합병원
- 다. 단과 수련병원
- 라. 기타

2) 과의 이용 병상 수

_____ 병상 (전 병상 수: _____ 병상)

2) 과의 이용 병상 수는 전용병동의 병상 수 또는 실제 이용병상 수 (입원환자 연인원수/365일), 만약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 값인 경우 올려서 기재함.
(예, 19.xxx 병상으로 계산된 경우는 20병상으로 기재)



I.인력 분야 – 1)지도전문의 현황

- 지도전문의의 경우 자매병원에 보직을 겸하거나 순회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주 근무 병원 한 곳에만 지도전문의로 기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이어야 합니다.
 - 지도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재활의학과 수련병원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로** 정의됩니다.
- ① 지도전문의 확인 시기는 평가년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인력분야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함.
- ② 평가년도에 지도전문의 퇴임 혹은 사직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입함.

1) 지도전문의 현황

직위	성명(한자)	의사 면허 번호 (취득년도)	전문의 자격 번호 (취득년도)	임명연월일	지도전문의 경력 (연수)	비고



I.인력 분야 – 1)지도전문의 현황

- ③ 지도전문의가 해외연수, 국내연수, 연구년 또는 안식년 상태인 경우 증명서 첨부이 필요함. 1년 이내의 기간은 지도전문의 자격이 유지됨.
- ④ 지도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재활의학과 수련병원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로 정의함.** 따라서 평가년도 5월 1일 기준 경력 1년 미만의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이전 경력이 없는 펠로우 (혹은 연구강사 및 임상강사) 1년차는 포함되지 않음.)
- ⑤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외국 병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는 학회 승인이 필요함.
- ⑥ 근무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해당 병원 센터 발령 등) 해당 지도전문의가 **전일제 전속전문의로 재활의학과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함.**
- ⑦ **병협 기초교육, 정기교육 이수증 (모든 지도전문의) 및 대한재활의학회 정기교육, 고시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교육 이수증 (2021년도 실태조사에 처음 등록되는 지도전문의부터) 을 "학회 요청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1.인력 분야 – 2)전공의 현황

- 전공의 총 정원: 처음 배정받은 전공의 정원
- 전공의 총 수: 지원 미달, 중도 사직 등으로 인해 줄어든 인원을 제외한 전공의 총수
- 중도 퇴직한 경우 인적사항, 수련 중지 시점(연차, 시기)을 기록한다.
- 가을 연차 전공의는 수련을 시작하거나 마치는 해에 한하여 0.5로 계산함.
- 현지 실사 시 인력 현황은 임명연월일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함.

2) 전공의 현황

연차	성명(한자)	의사 면허 번호 (취득년도)	전공의 임명연월일	비고



I.인력분야 – 3)재활의학과 직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간호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심리치료사 등
- 현재 시점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단 현 시점에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이라도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1년 초과 기간의 계약이 체결된 자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는 포함함.(근무 기간 및 계약서로 증명되는 인력만 인정: 병원장 직인이 있는 향후 계약을 서약하는 문서는 해당되지 않음)
- “전속 여부”는 재활의학과 소속 여부를 지칭한다.

직위	성명(한자)	면허 번호 (취득년도)	임명연월일	전속여부	비고





I.인력분야

※ 현지 실사 시 지도전문의/전공의 현황은 임명연월일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4) 지도전문의 수

- 가. 5명 이상 5점
- 나. 4명 4점
- 다. 3명 3점
- 라. 2명 2점

5)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총 정원 : 전공의 총 정원/지도전문의 총 수

- 가. 2.0명 이하 3점
- 나. 2.5명 이하 2점
- 다. 3.0명 이하 1점

전공의 총 정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수가 아닌 처음 배정받은 전공의 정원임.

6) 전공의 총 수/전공의 총 정원

- 가. 전원 충원 5점
- 나. 0.9 이상 4점
- 다. 0.8 이상 3점
- 라. 0.7 이상 2점
- 마. 0.6 이상 1점

전공의 총 수: 지원 미달, 중도 사직 등으로 인해 줄어든 인원을 제외한 조사일 현재 전공의 총 수.

II. 진료분야 – 1. 진료실적

1. 진료 실적

[[전년도 각 병원별 공식자료(연보 및 의무기록실 등의 병원관리부서 제공/확인)기준]

1) 외래환자 연인원 수

가) 신환자(과초진 포함) 수: 명

나) 재활의학과 의사 외래 진료 시행 환자 수: 명

다) 재활치료만을 시행한 외래 치료 환자 수: 명

2) 퇴원환자 실인원 수 : 명

3) 입원환자 연인원 수 : 명

4) 평균 재원일 수 : 일

5) 근전도·전기진단 환자 연인원 수 : 명

6) 타과에서 의뢰된 입원 환자 실인원 수 : 명

7) 토요일 근무 상황 ()

가. 휴무 나. 격주 시행 다. 매주 시행 기타 : _____



II. 진료분야 – 1. 진료실적

1) 외래환자 연인원수 :

나) 재활의학과 의사 외래 진료 시행 환자 수: 재활치료만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활의학과 의사에 의해 진료받은 환자 수

다) 재활치료만을 시행한 외래 치료 환자 수: 당일에 재활의학과 의사의 외래진료를 받지 않고, 물리, 작업,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 만을 받은 환자 수. 치료건수가 아닌 환자 수임.

2) 퇴원환자 실인원수 : 연간 퇴원환자의 실제 수, 즉 한 환자가 30일을 입원하고 퇴원하였다고 해도 1명으로 계산됨. 타과로 전과된 환자 수는 포함되지 않음.

3) 입원환자 연인원수 : 예를 들어 한 명의 환자가 30일을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면 그 환자의 연인원수는 30명으로 계산됨. 즉 1년 동안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일의 누적 총수임. 재활의학과 외래나 응급실진료를 포함, 전과되어 입원한 환자까지 포함하며 단 재활의학과 입원기간에 한함. 타과로 전과된 환자 수는 포함되지 않음



II. 진료분야 – 1. 진료실적

4) 평균 재원일수 : 의무기록실 또는 의료정보과(팀)의 공식적인 data에 기준함. 단 재활의학과 입원기간에 한함.

5) 과내 검사 및 술기 시행 연인원 수 :

가) 근전도 검사

① 연인원 수를 기재하며, 검사 항목별 수 혹은 시행 건수를 계산하지 않음. (예, A환자 1명에서 motor NCS, sensory NCS, F-wave, H-reflex, needle EMG, SEP 등을 동시에 시행 경우, 6례가 아니라 1명임.)

② 1일 시행한 것은 모두 1건으로 평가함.

③ 단, 동일인이 다른 증상 혹은 추적검사로 다른 날짜에 시행한 경우는 따로 인정함.

나) 초음파 검사 및 시술

① 연인원을 기재하며, 하루에 검사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함.

②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초음파검사 혹은 가이드주사를 시행하였으면 인정함.

II. 진료분야 – 1. 진료실적

6) 타과에서 의뢰된 입원 환자 실인원수 : 타과 의뢰환자의 전체 수만을 기재

7) 토요일 근무 상황 : 외래진료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외래환자 연인원수(재활의학과 의사 외래 진료 시행 환자 수) : 진료분야 1)-나)에 해당하는 환자 수임.

8), 9), 10), 11), 12) 문항에서 연차가 모두 없는 경우(예: 과년도 신규병원이어서 1년차 1명만이 근무하는 경우)에서도 같은 계산식을 적용함.

8) 외래환자 연인원 수(재활의학과 의사 외래 진료 시행 환자 수)

$$\frac{\text{재활의학과 의사 외래 진료 시행 환자 수}}{(1 \cdot 2 \text{ 년차 전공의 정원수} \times 150 \text{ 명}) + (3 \cdot 4 \text{ 년차 전공의 정원수} \times 200 \text{ 명})} \times 100 = (\quad \%)$$

가. 상기실적의 500% 이상	5점
나. 상기실적의 400 - 499%.....	4점
다. 상기실적의 300 - 399%.....	3점
라. 상기실적의 200 - 299%.....	2점
마. 상기실적의 100 - 199%.....	1점
바. 상기실적의 100% 미만	0점



II. 진료분야 – 1. 진료실적

14), 16) 문항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수는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원까지 포함하는 수임. 1인 당 1일 평균 환자 수는 **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를 계산할 때 A 환자 1명이 하루 2회 운동치료, 하루 1회 열전기치료를 시행받더라도 1명으로 계산함.

13) 월 평균 물리치료 환자 수	3718 명 ☐ 4,000명 이상 (4점) ☒ 3,000-4,000명 미만 (3점) ☐ 2,000-3,000명 미만 (2점) ☐ 2,000명 미만 (1점)	가이드라인
찾아보기... 1496735257_FileMedical13.xlsx 2016 물리치료 환자.xlsx [다운로드] [다운로드]		
14)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월 20일 기준) (물리치료사 인원은 좌측 메뉴-수련병원성격-수련병원성격에서 기입된 물리치료사 총 수입니다)	☐ 15명 이하 (4점) ☒ 16-20명 (3점) ☐ 21-25명 (2점) ☐ 26-30명 (1점) ☐ 31명 이상 (0점) ☐ 해당없음 (0점)	가이드라인
찾아보기... 1496735257_FileMedical14.xlsx 2016 물리치료 환자.xlsx [다운로드] [다운로드]		
15) 월 평균 작업치료 환자 수	1145 명 ☒ 1,000명 이상 (4점) ☐ 600-1000명 미만 (3점) ☐ 400-600명 미만 (2점) ☐ 400명 미만 (1점)	가이드라인
찾아보기... 1496735257_FileMedical15.xlsx 2016 작업치료 환자.xlsx [다운로드] [다운로드]		
16) 작업치료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 (월 20일 기준) (작업치료사 인원은 좌측 메뉴-수련병원성격-수련병원성격에서 기입된 작업치료사 총 수입니다)	☒ 15명 이하 (4점) ☐ 16-20명 (3점) ☐ 21-25명 (2점) ☐ 26-30명 (1점) ☐ 31명 이상 (0점) ☐ 해당없음 (0점)	가이드라인
찾아보기...		



II. 진료분야 – 1. 진료실적

17) 뇌질환부터 18), 19), 20), 21), 22)의 진료실적은 입퇴원장부, 원무과나 의무기록실 장부, 주 치료내용 등 근거 확인

22) 단 심폐질환은 뇌신경 재활 환자를 제외한 순수 심폐질환 환자이며, **주상병명이 심폐질환에 속하며, 심폐질환에 대한 재활의학적 평가 및 심폐재활치료를 시행한 환자만 해당됨.**

※ 8)부터 22)까지의 모든 진료실적은 실물 장부가 비치되 있어야 하며, 각 항목의 raw data와 계산식에 따른 %값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 전산화 수련실태 조사서에 자료 첨부 시 환자의 이름, 병록번호 등 개인식별 가능정보는 삭제 후 업로딩하여야 함.

※ **이상의 모든 서류는 해당병원 병원당국자의 확인(직인 혹은 서명)을 취득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23)의지, 보조기 및 자세유지 보조기 연간 처방 건수 (시범 항목):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II. 진료분야 – 2. 환자 평가 회의

24), 25) Conference 관련 항목은 학술집담회 기록과 출석부를 비치하여야 함 (일시/장소 /진행자/회의록/참석자자필서명으로 구성).

24) 가족 회의

- ① 가족회의 기록/출석부에는 최소한 환자와 가족구성원 1인 이상, 주치의, 담당 치료사의 참석이 확인되어야 함.
- ② 기존의 회의 횟수 규정으로 우선 채점하되, 주치의(의사)/담당 치료사/환자 가족의 3군 중 서명이 한 군에서 누락되어 있으면 1점 감점, 두 군 이상 누락되어 있으면 2점 감점을 적용함.

25) 평가와 재평가 회의 기록에는 신체검사, 기능적 척도, 목표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



III. 시설분야 – 1. 시설

※ 재활의학과 시설은 전체적인 평면도를 제시하고, 독립적인 진료 혹은 치료실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시설은 해당병원 시설팀 및 병원당국자의 확인을 취득한 자료로서, 평가 해당 연도의 자료이어야 한다.

1. 시설

2) 물리치료실 : 독립적인 치료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열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치료가 시행되는 침대 수를 기재한다.

6) 일상생활동작 평가, 치료실(ADL ROOM) : 출입문이 따로 있는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훈련실(ADL ROOM)을 갖추고 있으며, 주방과 변기를 갖추고 있으면 1점, 주방, 변기 중 1가지를 갖춘 경우는 0.5점으로 평가한다. 고정되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싱크대 및 이동식 간이변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작업치료실 내 파티션으로 구분하여 그 공간의 사용이 가변적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III. 시설분야 – 2.기구

- 9) 재활보조기구 제작실 : 독립적인 제작실 공간이 확보되고 의지 및 보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1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가 상근하지 않아도 된다. 보조기 제작 최소 수준은 적어도 열가소성 재질의 보조기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11) 동작분석실 : 과내 독립된 공간 및 전용카메라, Force plate, Dynamic EMG 등 3 기구를 보유하면서 재활 의학과 소속이면 2점, 타부서 소속으로 공동 사용하면 1점, 전용 공간이 있으나 3개의 기구 중 2개 이하인 경우는 0.5점으로 함.
- 12) 요로역동 검사실 : 타과 협진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0.5점으로 평가함
- 13) 재활의학과 전용 병동 : 병원으로부터 한 구역에 지정받은 병동을 갖춘 경우로서 그 구역을 모두 이용하거나 타과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재활의학과 실제 이용병상 수(입원환자연인원수/365일)가 20 beds 이상이어야 함.
- 14) 초음파 검사 기기 (시범 항목)
- 15, 16) 기구목록은 병원당국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로써 확인 가능해야 한다.



III.시설분야 – 3.기타 인력

-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7) 언어재활사, 18) 임상심리사 :

① 정규직(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1년 이상의 계약직까지 포함)으로서 자. 재활의학과 소속 여부는 재활의학과 전속에 한함. 직제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9) 사회복지사 :

① 정규직(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1년 이상의 계약직까지 포함)으로서 재활의학과 환자를 정기적으로 면담한 정형화된 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함. 재활의학과 전담 인력 유무는 면담 기록 또는 직제 표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기타 인력

17) 언어재활사

가. 재활의학과 소속	2점
나. 공동 또는 타과 소속	1점
다. 없음	0점

18) 임상심리사

가. 재활의학과 소속	2점
나. 공동 또는 타과 소속	1점
다. 없음	0점

19) 사회복지사

가. 재활의학과 전담 인력이 있음	2점
나. 공동 인력	1점
다. 없음	0점

IV.수련분야 – 1.전공의 수련

1)부터 11)까지 모두 비치된 근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7)부터 11)까지 Conference관련 항목은 학술집담회 기록과 출석부를 확인하여야 함(일시/ 장소/진행자/ 회의록/ 참석자 자필서명으로 구성).

2) 전공의 수련평가

전공의 수련평가는 정기적으로 의국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병원차원의 근무(수련)평가를 의미함.
필기 혹은 실기시험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근무평가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3) 입원기록(Admission Note) 기재 상태

- 질환별 자세한 입원기록 필요(Functional evaluation, Problem list, Goal 등)
- 장애 질환의 발생경과, 타과에서의 전과 시 검사소견에 대한 기록, 환자의 신경학적, 이학적 상태의 기록, 입퇴원시 환자의 기능평가에 대한 기록, 투약 상태에 대한 기록, 향후 치료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세한 것으로 간주함.

4) 경과기록(progress note) 기재상태

- S, O, A, P를 주 2회 기록하고, 월 1회 이상 기능 평가를 기록한 경우 자세한 것으로 간주함.



IV.수련분야 – 1.전공의 수련

5) 퇴원요약(discharge summary)에서 자세하다의 기준

- 환자의 신경학적, 이학적 상태의 기록
- 입원 시 환자의 검사소견에 대한 기록
- 입퇴원 시 환자의 기능평가에 대한 기록
- 퇴원 시의 투약
- 향후 치료 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세한 것으로 간주함.

6) 전공의수첩 기록 : 첫째, 전공의 모두의 전공의 수첩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둘째, 기록이 완전히 되어있는가 미비되어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야함.

7) 근전도.전기진단 회의(EMG Conference) : 환자 실례의 검사 및 판독 과정에 대한 회의가 근전도.전기진단 회의 전체 횟수의 2/3 이상 시행돼야 함.

IV.수련분야 – 1.전공의 수련

9) 기타 주간 학술활동

- Topic Conference, Textbook Reviews, Grand Round, Case Conference, Staff Lecture 모두 해당됨.

10) 타과의 공동 학술활동

① 타과(여러 과도 관계없음)와 공동으로 일정한 시간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친목 모임이 아닌 상호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함.

② 학술활동에 대한 회의록이 있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학술활동 내용/참석자 서명이 있어야 하고, 참석자 서명 중에 타과의 참석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함.

11) 전공의 평가시험 참석율 : 당해 년도 참석율을 기재함. 학회에서 확인된 참석 전공의 명단을 보관함. 1년차 전공의만 있는 경우, 이들이 모두 응시하여도 0점

IV.수련분야 – 2.연구

※ 연구 분야는 **전년도 3월부터 당해년도 2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함. 단, 대학이 아닌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 0000년 1월 1일 - 0000년 12월 31일도 가능함 (단, **공식적인 병원의 회계연도에 따름**).

- 17) 과에서 전자저널의 접속이 가능한지 : 과내에서 검색 및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고, 전문(full text)을 볼 수 있어야함.
- 18) 전공의 1인당 학술대회 연구발표 논문 수 (지상발표는 제외) : **구연, 포스터, 구연 포스터**까지 포함하며, 지상 발표는 제외함. 전공의 정원 수는 학회로부터 배정받은 전공의 수를 말하며 발표여부는 초록집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학술대회는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또는 국제학술대회”로 제한하며, 연구회나 지역 집담회, 소모임 등을 배제함. 대한의학회 등록 여부는 인터넷(<http://www.kams.or.kr/meminfo/sub5.html>)에서 확인이 가능함.



IV.수련분야 – 2.연구

20) 전공의 1인당 학술지 게재 논문 수

- ① 제 1 저자, 또는 교신 저자가 해당 병원 소속인 경우만 포함함.
- ② 국내 잡지는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뇌신경재활학회지, 대한임상통증학회지,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지, 대한연하장애학회지, 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지 및 기타 KCI 등재지에 한함.
- ③ 소속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SSCI, SCI, SCI-E 논문은 2배로 가중치 설정함.
- ④ 지도전문의만 들어간 논문도 인정하나 교신저자나 제 1저자인 경우만 1편으로 인정.
- ⑤ 공동 1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 "1/N(1저자 혹은 교신저자 수)"로 인정한다.
(예) 1)해당병원 소속 1인과 타병원 소속 1인이 공동 1저자 혹은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 0.5로 계산
2)해당병원 소속 1인과 타 병원 1인이 공동 1저자, 그리고 해당기관 소속 1인과 타 소속 1인이 공동 교신 저자인 경우는 $0.5+0.5=1$ 로 계산.)



IV.수련분야 – 2.연구

- 21) 실험(연구)실 보유 상태 : 연구기자재 구비 및 연구인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 사무실이나 교수실은 제외한다. 임상연구동에 위치한 재활의학과 전용 연구 공간은 인정한다.
- 22)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 적합성평가 :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질 적합성 평가서는 해당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수련 프로그램(전공의 진료, 교육, 연구)에 대해 일반적인 질 평가 방법인 계획/활동/평가/유지관리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기술된 평가서가 있어야 한다.
- ※ 질 적합성 평가서는 계획/활동/평가/유지관리의 영역으로 구성된 기록을 제시한다. 또한 질 적합성 평가 자료를 병원 내 수련교육위원회나 QI실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임상과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지 기록하여야 하며 평가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 계획/활동/평가/유지관리의 4가지 영역을 모두 구비하지 않은 경우 감점함.



IV.수련분야 -

3.전공의 복지 및 사회봉사활동

※ 모든 항목은 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며, 시설의 경우 평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22), 23), 24) 항목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전공의 당직실, 의국 혹은 전공의실, 회의실)

26) 주당 연차별 당직 횟수(가장 당직을 많이 서는 연차를 기준으로) : 가장 당직을 많이 서는 연차(대부분에서 1년차가 대상일 것
이나 1년차가 없는 병원의 경우는 상급 전공의 중에 가장 당직을 많이 서는 전공의를 기준으로 함)

27) 사회봉사활동의 정의

봉사 활동은 재활의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외봉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아래와 같은 기관에 참여한 경우로 한정함.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증명은 해당기관장의 서명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됨.

① 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② 언론 기관 및 준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익단체, 공적인 종교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이윤추구를 위한 기관, 정치참여를 위한 단체, 학교 법인 및 장학재단 등은 제외함.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 기관의 경우 전문성보다 개인의 활동 범주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됨.)

③ 진료봉사 활동



개정된 전공의 정원 배정 규정 (2020.06.17)

대한재활의학회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재활의학회의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 기본 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 원칙)

- 전공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1. 지도전문의의 수가 " $N/2$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과전문병원은 " $N/3$ "을 적용한다. (소수점 이하 절삭)
 2. 최소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3인 이상일 경우 $N/2$ 를 적용, 단과수련 병원은 최소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7인 이상일 경우 $N/3$ 을 적용한다.
 3. 정원 배정을 위한 순위 계산*에서 지도전문의는 당해 전공의의 수련 기간 12개월 (3월~익년2월) 동안 전속 근무한 경우 인정되며, 이직·병가·출산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원은 3개월까지만 인정한다.

제 2 조(기본 원칙)

- 전공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4. 지도전문의는 기존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도전문의 자격에 추가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전문의 취득 후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속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2) 전문의 취득 후 최근 2년 간 본 학회의 춘·추계학회 중에 1회 이상 등록하여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3) 전문의 취득 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윤리교육, 고시위원회 문항출제 워크숍을 이수한 적이 있는 자 (3)항은 2021년 이후 신규 지도전문의 취득자에 적용)

제 2 조(기본 원칙)

- 전공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5. 수련위원회에서는 **5월 1일, 9월 30일 기준으로 2회 지도전문의 근무현황을 조사**하며, 각 수련병원은 이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결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과장은 이를 **학회에 즉각(한달 이내) 고지**하여야 한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익년 전공의 배정에서 심사 없이 감원**할 수 있다.

제 3 조(증원/신규신청병원)

- 증원/신규신청병원의 정의

1. 증원신청병원 : 1~4 년차 전공의 정원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증원으로 본다. 증원은 1인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규신청병원 : 신규 병원은 전공의 정원 신청을 한 당해 기준 전공의 정원이 4개년차 중 하나도 없는 병원을 의미한다. 신규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은 1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도전문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 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의 배정은 1년에 2개 병원 이내로 한다. 전공의 정원이 남는 경우 이상 규정과 상관없이 신규병원에 1인을 배정할 수 있다.
3. 신규병원 정원 배정 후 2년 까지는 감원할 수 없다.

4 조(운영)

- 전공의 정원 증원/동결/감원에 따른 신규/증원/기존정원유지병원 순위
 1. 신규/증원 신청에 따른 기존 배정 정원의 인위적인 감원은 다른 요인에 의한 정원의 감원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정원의 변동이 전년도 전공의 정원의 5% 이내 범위가 되도록 한다.
 - 1) 전공의 전체 정원의 감원이 전년도의 전공의 정원의 5% 이상인 경우 신규/증원병원을 위해 기존병원의 감원을 시행하지 않는다.
 - 2) 아래 4조 2,3항에 서술된 대로 순서를 정한다. 배정된 순서대로 신규·증원 신청병원 목록과 감원병원의 목록을 전년도 전공의 정원의 5% 숫자 이내에서 작성한다. 작성된 목록 내에는 정원배정 순위 기준*에 따라 신규·증원 병원 목록의 높은 순위 병원과 감원병원의 낮은 순위 병원을 순서대로 비교하여 정원 이동을 결정한다. 감원 대상 병원의 순위가 증원 신청 병원의 순위보다 높은 경우 감원하지 않는다.
 - 3) 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발생 정원(수련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반납)이 있는 경우 해당 군에 정원을 우선 배정한다.

4 조(운영)

- 전공의 정원 증원/동결/감원에 따른 신규/증원/기존정원유지병원 순위
 2. 신규/증원병원의 우선순위
; 증원-->신규-->증원-->신규 순서로 교대로 1인 씩 배정한 다음해에는 신규-->증원-->신규-->증원 순서로 1인 씩 배정한다. 이러한 방식을 격년으로 적용한다.
 3. 감원병원의 우선 순위기존정원 유지병원 중 1인 배정병원과 2인 이상 배정병원을 두 군으로 나누어 감원하기로 한다. 전공의 감원 순서는 2인군 --> 1인군-->2인군의 순을 따르며, **전공의 정원 배정 순위***가 낮은 순으로 감원한다. (1인군과 2인군은 심사 당시의 1년차 전공의 정원 배정을 기준으로 나눈다.) 한번 감원된 병원은 감원 직후 4년 이내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시 감원하지 않는다.
(예, 해당년 전체 전공의 정원 100인 인 경우 기존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5인을 감원하여 학회 기준 순위에 따라 신규 신청병원에 2인, 증원 신청병원에 3인을 배정함)
자연발생 정원(수련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반납)이 있는 경우 해당 군에 정원을 배정한다.

4 조(운영)

- 전공의 정원 증원/동결/감원에 따른 신규/증원/기존정원유지 병원 순위

4. 수련실태조사 실사병원 선정 기준

수련실태조사 실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 1) 신규신청병원
 - 2) 증원신청병원 중 (지도전문의/전공의 총 정원) 값의 상위 병원
 - 3) 감원 대상 병원 중 (지도전문의/전공의 총 정원) 값의 하위 병원
 - 4) 기타 수련위원회에서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이 규정은 2022년(2021년 심사)부터 적용한다.

* 전공의 정원배정 순위

1. 증원 신청 및 감원 대상 병원

1순위: 지도전문의 / 전공의 총 정원(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0.01 단위로 평가, 값이 큰 곳이 우선이며, 동점인 경우는 2순위에 의해 결정)

-기존병원의 경우: 전공의 배정 총 정원수 (현 인원이 아님)

(예: 전공의 TO가 1명인데 2명밖에 없더라도 이 병원은 4명임)

-증원병원의 경우: 증원 후의 총 전공의 수

(예: 전공의 TO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신청한 경우 8명임)

2순위: 수련실태조사점수의 순위;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0.01 단위로 평가

-동점인 경우 3순위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3순위: 진료실적: (외래 연인원 + 퇴원 실인원) / 지도전문의 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0.01 단위로 평가)

* 전공의 정원배정 순위

2. 신규 신청 병원

수련실태조사점수의 인력 및 시설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배정

2024년 심사

1. 2024년 전공의 배정순서: 증원 -> 신규-> 증원-> 신규-> 증원 (격년)
2. 2024년 전공의 감원 순서: 2인군-> 1인군-> 2인군-> 1인군-> 2인군 (불변)
3. 지도전문의 대 전공의 비율을 따질 때 전공의 정원: 1 년차 배정정원이 모두 있는 것을 가정함. (1 년차 정원 X 4)(별도정책정원은 제외)
4. 증원 신청병원 중 2인 증원 또는 최대 3인 초과 증원 건은 기본적으로 반려 사항임.

지도전문의 종류?

- 전속 전문의
- 지도전문의
-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
- 대한재활의학회 정원 배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2020. 11. 22.

보 건 복 지 부

전속전문의

가.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 등에 적용한다. 단, 자문의나 시간제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으로 산정,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 불인정(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0, 2011.8.25.)

지도전문의

- 나. 「지도전문의」는「의료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전공의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4시간)을 받은 전문의를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 등에 적용한다.
- 수련병원(기관)장은 해당 병원의 해당 전문과목에 소속된 전속전문의 중에서 지도전문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원채정 지도전문의

다. 「정원채정지도전문의」는 전공의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전문의 중 동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을 모두 이수한 지도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채정 기준에 적용하며, 전문과목별 정원채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전문과목별 정원채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정원채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과목명	세부기준
N/2	1. 재활의학과	- 최소 정원채정 지도전문의 수 3명 이상일 경우 N/2

* N : 정원채정지도전문의 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4. 정원책정전문의의 일시적 결원 인정 범위

- 전공의 수련관련 정원책정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1년 이하의 국내 연구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공의 계속 수련을 인정한다.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여부

3.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육 주기를 안내하오니, 해당 병원(기관) 소속 지도전문의께서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재교육 주기
①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공통·학회)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주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으로 함
②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	▶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으로 함
③ 전공의법 시행규칙 (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자	▶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함

* 2012년 9월 30일 이전 수련병원(수련과목)에서의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2012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대한재활의학회 정원 배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 전공의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 4. 지도전문의는 기존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지도전문의 자격에 추가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전문의 취득 후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속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2) 전문의 취득 후 최근 2년 간 본 학회의 춘·추계학회 중에 1회 이상 등록하여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3) 전문의 취득 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윤리교육, 고시위원회 문항출제 워크숍을 이수한 적이 있는 자 (3)항은 2021년 이후 신규 지도전문의 취득자에 적용)

감사합니다.

